

스포츠분쟁해결기구로서의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관한 고찰

An Overview for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as the
Authority to Settle the Sports-related Disputes

손창주*

Chang-Joo Sohn

〈목 차〉

- I. 서 론
 - II. CAS의 설립과 조직 및 활동
 - III. CAS의 중재규칙과 중재절차
 - IV. CAS의 당면과제
 - 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스포츠중재위원회(ICAS),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보
통중재부, 항소중재부, 특별중재부(AHD), 반도핑중재부(CAS ADD), 반도핑규정
(Anti-doping Rules), 세계반도핑기구(WADA), 세계반도핑규약(WADC), 중재, 중재
인, 조정, 패널(중재판정부 또는 중재재판부), 스포츠분쟁

*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법무법인 천고 고문. darrensohn@naver.com

I. 서론

1980년대 이후 상업화와 국제화, 그리고 미디어의 발달로 스포츠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문에 있어서 그 이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생활의 즐거움과 활력이 되어가고 있음은 물론 갈수록 스포츠산업도 엄청나게 성장, 발전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적 변화 속에서 스포츠는 오늘날 글로벌 비즈니스로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 스포츠가 성장, 발전함과 더불어 스포츠 분야에서 다양한 분쟁이 집중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런데 스포츠분쟁을 제소하게 되면 경험이 적은 법원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고, 당사자들도 소송에 따른 비용이나 소송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재판 외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필요한 경우가 많다.¹⁾ 특히나 국제 스포츠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국제경기대회의 출전정지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라든지 선수의 자격, 심판의 판정, 도핑 등의 문제이다.

이 같은 국제스포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①관련 스포츠 협회에서 만들어진 내부 기관(authorities)에 항의 하거나 ②관할 국가의 법정으로 분쟁을 가져가거나 ③중재와 조정절차를 밟는 것이다.²⁾

대체적으로 스포츠 분쟁을 위의 ②와 같이 기존의 법령에 의한 법률상의 쟁송으로 해결할 경우 상당한 시간적 손실과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이와 같은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③과 같은 조정과 중재를 포함한 전문적이고 대체적인 분쟁해결절차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스포츠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데는 수개월 혹은 심지어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소송절차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그 결과도 예측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인들과 스포츠단체들은 그들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길 좋아하지 않으므로 전통적인 재판절차보다는 보다 신속하고 또 비밀이 유지되는 중재(혹은 조정)절차를 선호하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스포츠에 대한 국제적 분쟁해결기구인 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이하 CAS)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라 하겠다. 이 기구는 당시 IOC위원장이었던 사마란치의 제안으로 세계 스포츠계에서 최고의 분쟁해결

1) 김용길, “ADR을 활용한 스포츠사건의 해결에 관한 고찰-중재제도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1, 110면.

2) Matthieu Reeb,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in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1984-2004』, TMC Asser Press, The Hague, The Netherlands(2006), English language books are distributed by Cambridge Univ. Press. p.31.

기구를 지향하면서 1984년에 창설되어 그 동안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관련 분쟁을 다루어 왔고 1996년부터는 특별 중재부(Ad hoc Division, AHD)를 설치하여 올림픽게임 중에 발생하는 여러 분쟁-선수자격문제, 도핑 및 징계문제 등에 대해 중재결정을 내렸다. 그 후 IOC상벌위원회에서 최근 국제스포츠 분야에서 그 중요성과 빈도가 커져가고 있는 반도핑(Anti-Doping)³⁾ 문제를 기존의 CAS의 특별중재부에서 다루다가 2016년부터는 반도핑 중재부(CAS Anti-doping Division, CAS ADD)를 신설하여 그 곳에서 다루게 되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스포츠분쟁해결기구로서 30여 년 동안 42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해 왔으며 또 스포츠 최고법원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설립 배경과 조직 및 활동전반에 대해 알아본 후 CAS의 중재규칙과 중재절차에 관한 조문을 철저히 해석함으로써 CAS의 분쟁해결방법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고, 아울러 최근 그 중요성과 분쟁의 빈도가 점증하고 있는 도핑문제를 보다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6년에 새롭게 출범한 반도핑 중재부에 대해 그 설치 근거와 CAS ADD 중재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스포츠 단체의 선수에 대한 우월한 지위남용의 문제로 대표되는 CAS의 공정성 문제를 비롯하여 도핑 문제의 판정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당사국 특히 강대국의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CAS의 당면 문제점을 고찰해 봄으로써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최후의 보루로서 CAS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Ⅱ. CAS의 설립과 조직 및 활동

1. 설립배경

1980년대초 국제스포츠분쟁의 수는 점차 증가하였음에 반해 그 상황을 반영하여 분쟁을 해결할 구속력을 가진 최상위의 스포츠조직은 부재하였는데 1981년 사마란치(Juan Antonio Samaranch)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곧 스포츠에 특정된 재판 관할권을 창설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해(1982년) 로마에서 열린 IOC총회에서 IOC 회원이었으며 그 당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재판관이기도 했던 케바 므바에(Keba Mbaye)가 주재한 실무 작업을 통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3) 'Anti-Doping'을 '도핑 방지'로 번역하는 것이 더 명확한 번역이지만 그간 '반도핑'으로 계속 사용되고 쓰여진 개념이어서 본 고에서도 그대로 '반도핑'으로 쓰기로 한다.

설립될 규정이 마련되었다.⁴⁾

스포츠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둘러싼 분쟁에 비용이 적게 들고, 유연하며 신속한 절차를 만들어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재판 관할권을 창설해야 된다는 생각 하에 일을 추진하였다.

여기에는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재판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지출을 IOC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

그 후 CAS규정의 초안은 1983년 3월에 뉴델리에서 열린 IOC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되어 1984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다.⁵⁾ CAS는 그때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재판소장인 르바에와 사무총장 길버트 슈바(Gilbert Schwaar)의 지도력에 따라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2. CAS의 조직

(1) CAS의 독립성

1984년 CAS 규정에 따라 스포츠관련분쟁을 중재 혹은 조정하는 기관이 IOC의 자매기관으로 탄생하였으나 CAS 설립직후부터 중재기관으로 CAS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가 계속 문제가 되었었다. 그래서 CAS가 IOC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서 CAS 규정과 절차규칙이 1990년 일부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① CAS위원장이 IOC위원을 겸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CAS위원 60명 중에서 30명을 IOC가 선출하고, 그 중에서 15명이 IOC위원을 겸하도록 한 점, ③IOC회기 중에 IOC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2/3 다수결로 CAS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점, ④CAS의 총 예산을 IOC에서 지원하도록 한 점으로 인해서 CAS가 진정으로 IOC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었다.⁶⁾

CAS가 관리하는 중재재판소의 소재지는 스위스 로잔이고 중재의 준거법이 스위스 국제사법의 중재관련규정이기에 CAS 절차에 따른 중재판정의 취소는 스위스의 관할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스위스 국제사법에 관한 스위스연방규칙 192(2)항에서는 매우 제한된 상황 즉, 아래의 다섯 가지 경우에서만 CAS규칙에 대해서 스위스 연방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다.

4) Ibid. p32

5) Yeun, Kee-Young,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ports Arbitration Bodies and Challenges of Legislative Policy for Reestablishment of Sports Arbitration Agency in Korea",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ol. 23 No. 3.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Sep. 2013, p108.

6) Ettinger, David J. "THE Legal Status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4 Pace Y.B.Int'l L. 97, 1992. pp.112-113.

- ① 1인의 중재자가 일정하지 않게 임명되었거나 중재재판소가 불규칙적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 ② 중재재판이 사법관할이 아닌 곳에서 잘못 열린 경우
- ③ 중재재판이 사법적 주장(claims)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실패하거나 사법적 주장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 판단했을 경우
- ④ 각 당사자의 동등성(equality)이나 반대진술 할 권리가 존중되어지지 않았을 경우
- ⑤ CAS 규칙이 스위스의 공공정책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⁷⁾

1993년 스위스 연방 최고법원은 CAS 중재 패널(Panel)⁸⁾이 내린 중재판정의 취소 소송에서 판결로써 CAS가 IOC로부터 독립한 중재기관이라는 점을 선언한 바 있다.⁹⁾

(2) 스포츠중재위원회(ICAS)

CAS 설립 당시에는 IOC의 직할기구였지만 IOC가 제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러 1993년 CAS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고, 1994년에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CAS: 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가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따라 IOC에 의해 스위스 민법상 재단으로 분리 설립되어 ICAS가 IOC를 대신해서 CAS 운영 및 재정을 관장하게 되었다. ICAS는 CAS의 최상급기관으로 CAS의 행정과 재정에 책임을 진다.¹⁰⁾ ICAS의 주된 설립목적은 CAS의 독립성과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¹¹⁾

ICAS는 ADR과 스포츠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식견 있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하계올림픽국제스포츠연맹연합회(the Association of Summer Olympic IFs: ASOIF)와 동계국제스포츠연맹연합회(the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Winter Sports Federations: AIWF)를 포함한 국제스포츠연맹(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IFs),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the Association of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s: ANOC),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가 각각 4인을 선정하여 12인을 선출하고, 이들

7) James, Mark et al., Sports Law(Third Edition, Cavendish Publishing, 2006), p63.

8) 중재재판부 또는 중재판정부 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본 고에서는 그냥 패널 로 쓰기로 한다.

9) 1991년 12월 5일 국제승마연맹(FEI)이 말에 약물을 투여했다는 이유로 독일 선수(Elmar Gundel)를 실격시키고 국제경기출진정지를 결정하자 이에 대하여 독일승마연맹이 CAS에 중재를 제기하였는데 CAS는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 출진정지기간과 벌금을 일부 줄여주었지만 해당 경기에서 실격처리한 사항을 파기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독일선수 ‘엘마 군델’은 CAS가 관리하는 중재에 적용되는 스위스 국제사법 제191.1조에 근거하여 CAS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스위스 연방 최고법원은 CAS의 독립성과 불편부당성(the conditions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을 확인한 바 있다. 강병근,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스포츠분쟁의 처리”, 스포츠와 법, 제5권, 한국스포츠법학회, 2004, 102면.

10) ICAS 및 CAS 절차규정 S2- The purpose of ICAS is to facilitate the resolution of sports-related dispute through arbitration or mediation and to safeguard the independence of CAS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It is also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ing of CAS.

11) 스포츠중재규칙 S2조.

ICAS 위원 12인이 체육인의 이익을 대변할 4인을 선출하여 총 16인의 위원이 되면, 이들 16인의 위원이 스포츠 관련 단체로부터 독립적인 4인의 위원을 선출한다.¹²⁾ ICAS는 형식적으로는 IOC로부터 독립된 사업부의 역할을 담당하며, 본부는 스위스 로잔에 두고 있다.¹³⁾

ICAS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되며 중임할 수 있고, 스포츠중재규칙(Code)에 따른 직무 수행, 비밀엄수의무를 부담한다. ICAS 위원은 CAS 중재인 또는 CAS 절차에 참여한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¹⁴⁾ ICAS의 주요 기능으로는 ①스포츠중재규칙(code)의 제정 과 개정, ②ICAS 조직 자체의 구성, ③CAS 중재인 및 조정인 임명, ④중재인의 제척결정, ⑤CAS의 운영(상설 또는 임시 중재기관의 설치), ⑥CAS 사무국장의 임명 및 해임, ⑦재정(기금의 조성)·조직구성·업무 감독 등이다.

그러므로 ICAS는 CAS의 조직과 재정 및 운영 등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상위기관이다. 예컨대, ICAS의 위원장은 CAS의 소장을 겸임하고,¹⁵⁾ ICAS 총회에서 CAS의 사무총장, 보통 및 항소중재부 부장, 각 2명의 보통 및 항소중재부 부부장을 모두 선출한다.¹⁶⁾ 또한 ICAS는 CAS의 재정을 관리하고 예산과 회계를 승인하며, 사무국의 업무를 감독한다.¹⁷⁾ ICAS는 ICAS 위원장, 부위원장 2인, 보통중재부장, 항소중재부장으로 구성되는 임시 임원회(Board)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¹⁸⁾

ICAS는 최소한 1년에 한차례 소집하며, ICAS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과반수 위원이 참석해야 하며, 의사결정은 회의 소집 중에 또는 서신으로 투표하는 위원의 단순다수결로 이루어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투표권을 갖는다. 다만 규칙(Code)의 개정을 위해서는 ICAS 위원 2/3 다수결이 필요하다.

(3) CAS의 조직구성 개관

1) 보통 중재부(Ordinary Arbitration Division)

CAS에 제출되는 분쟁사건은 원칙적으로 상업적 성격을 지닌 것과 징계 성격을 가진 것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상업적 분쟁유형으로는 스폰서쉽, TV중계권, 국제대회 개최, 선수 이적, 고용계약, 에이전시 계약, 경기 중 부상사고 책임 등이며, 징계 관련으로는 도핑, 선수 폭력, 심판권 남용 등이 있다.¹⁹⁾ 즉, 여기서는 상거래계약, 프로젝트 약이나 초상권에 관련되는 문제 등 소위 상업적 분쟁을 취급한다.

12) 스포츠중재규칙, S4조.

13) 스포츠중재규칙, S1조.

14) 스포츠중재규칙, S5조.

15) 스포츠중재규칙, S9조.

16) 스포츠중재규칙, S6조, 2호 및 6호.

17) 스포츠중재규칙, S6조, 5호 및 7호.

18) 스포츠중재규칙, S7조.

19) 김대희, “국내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설치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4, 168면.

중재내용이나 사례는 공표되지 않는다. 이것은 스포츠계의 일반적인 분쟁처리의 형태로 전형적인 ADR의 기능을 하고 있다.²⁰⁾

2) 항소 중재부(Appeals Arbitration Division)

CAS에 제출된 두 번째 분쟁의 그룹은 징계 사건이며 그 중 많은 수가 도핑 관련 사건이었다. 물론 도핑 사건 이외에도 CAS는 경기장에서의 폭력, 심판의 오심이나 남용 등 다양한 징계사건을 처리해왔다. 이러한 징계사건은 일반적으로 관련 스포츠단체나 기구에서 1차적으로 다루어지며,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CAS의 항소 중재부에 호소하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주게 된다.²¹⁾ 즉, 항소 중재부는 스포츠 단체의 결정에 대해서 선수 혹은 경기단체가 제소하는 경우에 분쟁을 해결해 주는 곳이다. 주된 대상은 IOC와 국제스포츠연맹이고, 거의 모든 국제스포츠연맹은 항소 중재부의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²²⁾

3) 특별 중재부(Ad hoc Division of the CAS)

이것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축구, 영연방 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는 것이다. 모든 올림픽출전 선수들은 특별중재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것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CAS에 판정을 구할 수 밖에 없다.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이었다. 경기 기간 중에는 중재인이 항상 10명 정도가 특별중재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대기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다.²³⁾ 20여 년 동안 CAS 특별중재부는 선수자격 문제, 도핑 및 다른 징계 문제 등에 관하여 최후의 관할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2016년 CAS에 반도핑 중재부가 설치되어 도핑사건은 이제 반도핑 중재부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이 특별중재부의 가장 큰 특징은 운동선수와 연맹이 매우 짧은 마감시간 내에 무료로 분쟁해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²⁴⁾

4) 반도핑 중재부(CAS Anti-Doping Division, ADD)

그간 올림픽경기와 관련된 도핑사건이 급속히 증가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CAS 특별중재부에서 처리했던 도핑사건을 전담하는 중재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2016년 리우 올림픽게임에서는 CAS에 반도핑 중재부(CAS Anti-Doping Division: 이하 CAS ADD)를 설치하여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게임 중에 발생하는 도핑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20) 스포츠중재규칙 S20 a조. 연기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비추어 본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CAS)의 역할과 과제,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97면.

21) 연기영, “2016리우올림픽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반도핑중재부의 규정과 활동”,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1호(통권 제50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7, 5면.

22) 스포츠중재규칙 S20 b조.

23) 올림픽게임 중재규칙(Arbitration Rules for the Olympic Games) 제2조.

24) 올림픽게임 중재규칙 제22조. 연기영, 앞의 논문, 2017, 5면.

다루게 되었다. CAS의 감독 기관인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CAS)는 CAS ADD 중재규칙을 제정하고, 이 부의 부장과 부부장 및 중재인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²⁵⁾

IOC 집행위원회(IOC Executive Board)는 올림픽 기간 동안 반도핑규정 위반에 대한 결정을 독립적인 기관에 위임하기로 이미 동의했다. CAS ADD는 IOC 징계위원회를 대신하여 올림픽 게임 중에 채취한 샘플을 재분석할 권한 뿐만 아니라 도핑사건에 대하여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권한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올림픽 어젠다(Olympic Agenda) 2020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제 4차 올림픽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에 따라 반도핑 테스트를 스포츠 단체와는 독립해서 수행하게 되었다.²⁶⁾ IOC 집행위원회가 CAS ADD로 위임하는 것은 올림픽헌장 제 59.2.4 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²⁷⁾ 한편 리우 올림픽에서는 총 34건이 특별중재부에 회부되었는데 그 중 도핑에 관한 8건중 7건을 반도핑 중재부에서 심리하였다.

5) 중재인과 조정인의 구성 및 자격

CAS는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절차규칙(제R27조 이하)에 따라 중재·조정을 하는 패널을 두고 운영한다. CAS의 중재인은 충분한 법학적 교육과 스포츠법이나 국제중재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CAS 중재인 목록에 있는 자 중에서 ICAS에 의해서 임명된다.²⁸⁾ 중재인은 1인 또는 3인으로 패널을 구성하며, CAS의 제소전에 당해사건의 변호사로서 활동한 경우 그 사건의 중재인이 될 수 없다.

CAS는 전통적으로 스포츠계의 국제 재판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항소 중재재판부의 판단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이고, 재판소의 판례집과 같은 형태로 순서대로 공표하고 있다. CAS가 관리하는 중재인 명부에 등재된 패널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부담한다.²⁹⁾ 2016년 기준 CAS 중재인의 명단에는 90여 개국의 350명의 중재인과 60명의 조정인이 있다.

CAS의 조정인은 4년 임기로 ICAS에 의해 선임되며, 특별한 자격요건을 정해 놓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ADR에 대한 식견과 스포츠법적 쟁점에 대하여 역량이 있으며, 영어나 불어 등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조정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일련의 진행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일단 조정인으로 활동하는 한에서는 당사자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비밀유지의무를 진다.³⁰⁾

25) CAS는 2016년 7월 26일 언론을 통해 “2016 리우 올림픽경기장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해 두 가지 사무소(offices legal disputes and doping cases)를 개설한다”고 발표하였다. Lausanne, 26 July 2016-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has opened two temporary division on the site of Rio 2016 Olympic Games. 연 기영, 앞의 논문 2017, 5면.

26) <http://www.sportsintegrityinitiative.com/cas-anti-doping-division-to-handle-olympic>. 2018년 3월 1일 최종 검색.

27) Olympic charter 59.2.4 the IOC Executive Board may delegate its power to a disciplinary commission

28) CAS 중재규칙 S 13.

29) 스포츠중재규칙, 제S17조 내지 제S19조.

3. 분쟁해결의 근거

- (1) 올림픽헌장 제59조(분쟁-중재): 올림픽 경기에 임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스포츠관련 중재규칙에 따라 CAS에 대해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연맹, 협회 등 스포츠 관련 단체는 해당 스포츠 관련 단체의 규정 혹은 규칙에서 혹은 중재제기합의에서 자신들의 분쟁을 법(Code)에 따른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중재당사자가 된다.³¹⁾ 또한 모든 올림픽 출전 선수들은 임시중재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것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게임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CAS 에만 판정을 구할 수 밖에 없다.³²⁾
- (2) 올림픽운동 반도핑규정 3장 제1조(항소 중재): IOC, IF, NOC, 기타 단체가 당해규정을 적용하여 내려진 결정을 받은 자는 CAS에 항소할 수 있다.

Ⅲ. CAS의 중재규칙과 중재절차

CAS의 스포츠중재규칙(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³³⁾은 7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중재기구에 관한 26개 조항(S1조부터 S26조)과 중재절차에 관한 44개 조항(R27조부터 R70조)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중재기구에 관한 조항은 ICAS의 조직구성·기능·운영·CAS의 임무·중재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재절차에 관한 조항은 중재절차 일반에 관한 조항(R27조~R37조), 보통중재절차에 적용되는 조항(R38조~R46조), 항소중재절차에 적용되는 조항(R47조~R59조), 중재절차 비용(R64.1~R65.4조)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³⁴⁾

또한 1999년부터 스포츠중재규정에서 조정절차도 마련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권고적 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규율하게 되었다. 즉, 조정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지 못하는 비공식적인 절차에 해당하지만 CAS는 2013년 9월 1일부터 별도의 조정절차에 관한 규정(CAS Mediation Rules)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세계반도핑규칙(WADA Code) 제 13조 2. 1항에서 CAS를 도핑관련 분쟁의 최종심급기관으로 규정하였다.

30) CAS 조정규칙 제6조 및 제 10조. CAS 조정규칙(CAS Mediation Rules)은 2013년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31) 스포츠중재규칙 제S1조.

32) Yeun, Kee-Young, Ibid, p111.

33) 중재규칙(규정)은 1994년 11월 22일부터 시행되었고, 2003년 일부 개정을 거쳐 2010년 1월 1일, 2013년 1월 3일, 2017년 1월1일 등에 개정 되었다.

34) 지철호, “ADR을 통한 스포츠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5, 102면.

아울러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을 시작으로 각종 스포츠대회에 특별중재부(Ad hoc Division, AHD)를 설치하여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1. CAS 중재절차에 관한 총칙

CAS의 절차규칙은 스포츠 관련 분쟁을 CAS에서 해결하는데 동의한 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데, 원칙적으로 보통중재절차, 항소중재절차, 권고적 의견에 관한 협의 절차에 모두 적용된다.³⁵⁾

CAS와 각 중재 패널의 소재지는 스위스 로잔이지만, 패널 위원장 혹은 해당 부장이 아직 선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 중재부장이 사정상 필요에 따라서 당사자 전체와 협의한 후, 다른 장소에서 심리를 열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심리에 관하여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³⁶⁾ CAS 업무상 사용하는 언어는 불어와 영어이며, 당사자들의 합의, 패널 위원장 혹은 관련 중재부장의 결정으로 2개 언어 중 어느 하나를 중재에서 사용할 언어로 선택해야 한다.³⁷⁾

각 당사자는 대표자나 조력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서면을 CAS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의 성명, 주소, 전자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CAS 사무국, 다른 당사자, 패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³⁸⁾

CAS 또는 패널이 당사자에 대해서 하는 통지 혹은 연락은 사무국을 통해서 해야 한다.³⁹⁾ 규칙(Code)에서 정한 시한산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한은 CAS가 통지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개시되며, 공식적인 휴무일은 시한 산정 계산에 포함된다. 이러한 시한 만료 마지막 날 당사자 본인의 법적 주소지나 또는 대표자(대리인)가 있다면 그들의 법적 주소지에서 자정 전까지 보내진 의사도 인정된다.⁴⁰⁾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신청이 있는 경우, 패널위원장 혹은 관련 중재부장이 사정상 필요한 경우 시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항소요청서 제출시한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다.⁴¹⁾

CAS는 최소 350명의 중재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주로 중재나 스포츠법 전문가이며,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⁴²⁾

모든 중재인은 당사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일방 당사자에 대해서 독립성을

35) 스포츠중재규칙, 제R27조.

36) 스포츠중재규칙, 제R28조.

37) 스포츠중재규칙, 제R29조.

38) 스포츠중재규칙, 제R30조.

39) 스포츠중재규칙, 제R31조.

40) 스포츠중재규칙, 제R32조. 기한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소가 기존의 중재규칙에서는 CAS 소재지의 주소의 시간이 기준이었으나 2017년 1월1일 개정된 규칙에선 당사자 주소의 시간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41) 스포츠중재규칙, 제R32조.

42) 지철호, 앞의 논문, 2015, 103면.

저해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즉시 고지해야 한다.⁴³⁾ 중재인이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ICAS만이 제척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중재인을 해촉 시킬 수 있다. 중재인이 제척 혹은 해촉 된 경우 보궐해야 하며, 이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거나 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경우, 보궐 이전에 거행되었던 절차가 반복되지 않고 해당 절차가 속행되어야 한다.⁴⁴⁾

중재당사자는 중재요청서 또는 항소요청서를 CAS에 제출한 후, 패널에 해당 서류가 이송되기 이전에는 관련 중재부장이 그리고 서류 이송 후에는 패널이 일방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임시적 보전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항소중재절차에 합의하면서 국가기관에 대해서 상기 처분을 신청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지만 보통중재절차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경우 이와 관련한 임시적 보전 처분은 포기할 수 없다. 임시적 처분이 신청되면, 관련 중재부장 혹은 패널은 임시적 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게 10일 이내 또는 필요하다면 더 짧은 시간 내에 기간을 정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도록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 명령을 해야 한다. 매우 긴급한 경우, 관련 중재부장 또는 패널은 제출된 요청서를 근거로 명령을 내린 후 대상 당사자를 심리할 수 있다. 임시적 보전처분을 허가할 때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⁴⁵⁾

또한 임시적 보전조치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국가적 및 국제적 중재기구간의 경합이 가능하다. 하지만 CAS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를 했다면, CAS에 의한 배타적 관할만 인정될 뿐 국내적 법원에 의한 제소는 불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중재규정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CAS에 의하여 아주 신속하게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⁶⁾ 이러한 조치는 스포츠분쟁에 관련하여 아주 의미 있고, 종종 긴급한 시간을 다투는 내용들이 적용 될 수 있는데, 특정한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경기에 임하는 선수나 혹은 경기 당사자인 팀이 그 상대방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의 자격을 부인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문제는 가급적 빨리 그 분쟁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

2. 보통중재절차(the ordinary arbitration procedure)

(1) 일반원칙

중재신청 당사자는 일정한 요건을 적시한 요청서와 일정 비용을 CAS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중재신청 당사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해서

43) 스포츠중재규칙, 제R33조.

44) 스포츠중재규칙, 제R34조 내지 제R36조.

45) 스포츠중재규칙, 제R37조.

46) 스포츠중재규칙, 제R44조.

보정기회를 주고,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⁴⁷⁾

CAS 사무국은 CAS에 대한 중재제기 합의가 없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면 중재를 진행시키고, 당사자들이 분쟁의 본안에 적용할 법, 중재인(들)의 수 및 선택방식에 관한 사항, 중재요청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한을 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⁴⁸⁾

(2) 패널의 구성

패널은 1인 혹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중재합의에서 중재인의 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중재부장이 분쟁 금액과 분쟁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그 수를 결정한다. 당사자들은 중재인의 선정 방법에 관해서 합의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다면 CAS 절차규칙에 따라서 해당 중재인을 선정한다. 중재부장이 정한 시한 내에 중재인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 중재부장이 해당 중재인을 선정한다.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은 중재부장의 확인을 받은 후에 선정된 것으로 간주한다.⁴⁹⁾

중재신청인 혹은 피신청인이 수 명인 경우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중재인의 수와 선정방법을 정해야 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부장이 CAS 절차규칙에 따라서 선정한다. 피신청인이 제3자의 중재참여를 원하거나, 제3자가 중재당사자로서 참가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는 중재합의가 있거나 제3자와 다른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 할 경우에만 제3자가 중재에 참여할 수 있다. CAS 절차규칙에서 정한 시한 내에 상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재부장 혹은 패널이 제3자의 중재참여 여부를 결정한다.⁵⁰⁾

중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패널 혹은 관련 중재부장은 알선(Conciliation)⁵¹⁾에 의한 분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⁵²⁾

(3) 중재절차

중재절차는 우선 서면심리를 한 후에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 서면심리는 신청인의 준비서면과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을 한차례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패널은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대한 신청인의 반박준비서면, 그리고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재반박 준비서면을 한차례 더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중재요청서와 그에 대한 답변서에 하지 않았던 청구를 신청인의 준비서면과 이에 대한 답변서에서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새로운 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 당사

47) 스포츠중재규칙, 제R38조.

48) 스포츠중재규칙, 제R39조.

49) 스포츠중재규칙, 제R40조.

50) 스포츠중재규칙, 제R41조.

51) 알선(Conciliation)은 분쟁의 해결 또는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를 매개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ADR의 유형인데 조정방법 중에서 국가기관의 개입정도가 가장 낮다. 연기영, 앞의 논문, 100면.

52) 스포츠중재규칙, 제R42조.

자들은 자신의 서면 주장과 함께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항의 근거가 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면심리단계 이후에는 당사자들이 공동 합의하거나 패널이 예외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증거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 당사자들은 서면주장 시 증인 및 감정인, 다른 입증방법을 밝혀야 한다.⁵³⁾

한편, 신청인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패널은 중재를 속행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일방 당사자가 출석통지를 제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리기일에 출두하지 못하는 경우 패널은 심리를 속행할 수 있다.⁵⁴⁾

서면주장 단계 이후 패널 위원장은 심리 기일을 정해야 하고 중재신청인 그리고 피신청인 순서로 진행되는 최종구술변론이 있는데 구술심리단계는 공개되지 않으며, 패널위원장은 예외적으로 전화 혹은 화상회의 방식으로 증인 및 감정인을 심리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사전에 서면증언을 제출할 수도 있다.⁵⁵⁾

패널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 규칙을 적용하지만, 당사자들이 이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스위스 법에 따라서 해당 분쟁을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패널은 형평과 선에 따라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받는다.⁵⁶⁾

패널은 다수결로 판정을 내리고 다수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단독으로 판정을 내린다.

CAS 사무국이 통지한 판정은 확정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당사자들이 스위스에 주소, 거소, 혹은 영업소를 갖지 않는 경우, 그리고 당사자들이 중재합의에서 혹은 나중에 중재 개시시 체결한 합의에서 명시적으로 중재판정의 취소절차를 활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해당 판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⁵⁷⁾

3. 항소중재절차(the appeals arbitration procedure)

연맹, 협회 혹은 스포츠 관련단체의 결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급 단체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CAS에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항소인은 활용 가능한 법적 구제를 완료한 후, 위 단체의 규정 혹은 규칙에 따라서 혹은 당사자들이 체결한 특별 중재 합의를 근거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제1심의 역할을 하는 CAS 중재 패널의

53) 스포츠중재규칙, 제R44.1조.

54) 스포츠중재규칙, 제R44.5조.

55) 스포츠중재규칙, 제R44.2조.

56) 스포츠중재규칙, 제R45조.

57) 스포츠중재규칙, 제R46조.

중재판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제1심 절차에 적용되는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해당중재판정에 대한 항소를 CAS에 제기할 수 있다.⁵⁸⁾ 또한 중재규칙은 당사자가 항소를 하기 위하여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⁹⁾ 이러한 집행정지는 CAS에 항소신청서가 접수되었을때 그 효력을 갖게 되며, 집행정지 신청에는 그 정지를 지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항소는 항소인이 대상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⁶⁰⁾

항소인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항소요청서를 제출하고 사무국 비용으로 500 스위스 프랑을 예납해야 한다. 항소요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CAS 사무국은 1회에 한하여 항소인에게 보정의 기회를 주고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절차가 이행되지 않는다.⁶¹⁾

항소신청서에서 당사자들이 단독 중재인에게 항소하기로 합의하지 않거나 사안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는 3인으로 된 중재 패널에 제기되어야 한다. 동일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중재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로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중재부장이 1개의 패널에서 해당 사건들을 다루기로 결정할 수 있다.⁶²⁾

항소 시한인 21일이 경과한 후 10일 이내에 항소인은 항소를 야기한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적시한 준비서면, 그리고 이와 함께 자신이 근거로 삼고자 하는 모든 증거서류 및 다른 증거의 명세를 CAS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인은 준비서면에서 증인 및 감정인, 서면증언, 기타 입증방법을 적시하여야 한다.⁶³⁾

처음부터 CAS에 회부한다는 명확한 중재협약이 없지 않다면, 협약이 임박한 분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닌 한, 또는 항소인에게 가능한 내부적인 법적 치유책이 명백하게 소진되지 않는 것이 아닌 한, CAS는 중재절차를 착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AS사무소는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을 보내고 항소중재부장은 중재패널구성을 R53조와 R54조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적용가능하다면 중재부장은 또한 항소에 대해 유예나 잠정조치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CAS 사무소는 항소장과 항소서면의 사본을 해당 결정을 내린 기관에 참고로 보내야 한다.⁶⁴⁾

CAS 사무소는 당사자들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항소중재절차의 시작과 중재 패널의 구성, 중재 기일에 대해 이후 단계와 적용가능한 곳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⁶⁵⁾ 당사자들의 합의로써, 패널 또는, 아직 지명되지 않았다면, 중재부장이 신속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위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계

58) 스포츠중재규칙, 제R47조.

59) 스포츠중재규칙, 제R48조.

60) 스포츠중재규칙, 제R49조.

61) 스포츠중재규칙, 제R48조.

62) 스포츠중재규칙, 제R50조.

63) 스포츠중재규칙 제R51조.

64) 스포츠중재규칙, 제R52조.

65) 스포츠중재규칙, 제R52조. 2017. 1. 1. 신설.

류 중인 항소의 대상이 되는 판결과 관련 있는 항소를 제기하면 패널의 위원장이나 또는 지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중재부장이 양 당사자로부터의 제출 후에 두 절차를 병합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⁶⁶⁾

당사자들이 단독중재인으로 구성되는 패널에 또는 항소중재부장이 단독 중재인에게 항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피항소인은 항소요청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해당 시한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는 중재부장이 피항소인을 대신하여 중재인을 선정한다.⁶⁷⁾ 당사자의 합의 또는 중재부장의 결정에 의하여 단독 중재인을 선정해야 할 경우, 중재부장은 항소요청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한다. 만일 3인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한 경우, 중재부장은 피항소인이 중재인을 선정할 때 그리고 중재인들과 협의한 이후 패널위원장을 선정해야 한다. 중재부장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중재인이 중재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확인이 끝난 이후에야 해당 중재인이 선정된 것으로 간주한다.⁶⁸⁾

항소인의 항소사유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피항소인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피항소인이 정해진 시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패널은 중재를 진행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⁶⁹⁾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거나 패널위원장이 예외적인 사유를 감안하여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보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항소 및 답변의 근거를 제출한 후 근거로 삼고자 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명시할 수 없다.⁷⁰⁾

패널은 사실관계와 법률에 대해서 재심할 수 있으며, 대상 결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결정을 내리거나 그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을 이전 중재패널에 환송시킬 수 있다. 패널은 당사자들과 협의하거나 혹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심리를 열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심리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된다. 일방 당사자가 적절한 출두통지를 받았음에도 심리에 출두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패널은 심리를 거행할 수 있다.⁷¹⁾

패널은 적용 가능한 규칙 그리고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규칙, 이의 제기 대상이 된 결정을 내린 연맹, 협회 혹은 스포츠 관련 단체가 주소를 둔 지역의 법, 혹은 패널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법규칙을 근거로 해당 분쟁에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 때, 패널은 특정규칙의 적용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⁷²⁾

66) 스포츠중재규칙, 제R52조.

67) 스포츠중재규칙 제R53조.

68) 스포츠중재규칙 제R54조.

69) 스포츠중재규칙 제R55조.

70) 스포츠중재규칙 제R56조.

71) 스포츠중재규칙 제R57조.

판결은 다수결로 내려지며, 다수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판정하는 것과 판정의 효력 등은 보통중재절차와 사실상 동일하다. 또 판정의 주요 부분은 항소요청서가 제출된 후 4개월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하지만, 패널 위원장은 이유가 기재된 요청서에 따라서 항소중재부장에게 상기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판정, 해당 절차의 결과 요약 그리고/또는 그 결과를 적시한 보도자료는 당사자들이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CAS가 공표해야 한다.⁷²⁾

만일 중재결정의 판결 요지가 있다면 그 사본을, 그리고 중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전체 중재결정의 사본을 당해 결정을 의뢰한 해당 기관이나 스포츠 부서에 보내져야 한다.⁷⁴⁾

4. 조정절차(the mediation procedure)

CAS 조정은 일방 당사자가 선의로 상대방 당사자와 함께 스포츠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하고자 조정합의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비구속적이며 비공식적인 절차를 말하는데 당사자가 스포츠 관련 법적 분쟁을 조정(mediation)에 의해서 해결하고자 원하는 경우에는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의 사무국에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당사자는 CAS 조정인을 통하여 협상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⁷⁵⁾ 그러나 조정은 조정인이 어느 일방 당사자를 위해 분쟁해결을 하도록 할 수는 없다. 이처럼 CAS 조정은 중재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와의 합의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ICAS는 CAS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조정인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⁷⁶⁾ 조정의 합의는 하나의 계약서나 분리된 합의서에 조정조항이 있으면 된다.⁷⁷⁾

원칙적으로 CAS 조정에 있어서는 계약적 분쟁을 주로 다루게 된다. 엄격한 요건하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핑문제, 승부조작, 뇌물수수와 같이 징계문제와 관련된 분쟁사안은 CAS 조정으로부터 제외된다.⁷⁸⁾

조정절차는 1인 또는 3인의 패널을 통하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조정부와 항소조정부로 구분된다. 조정이 성공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서명에 따라 조정은 종료되게 된다.⁷⁹⁾

72) 스포츠중재규칙 제R58조.

73) 스포츠중재규칙 제R59조.

74) 스포츠중재규칙 제R59조. 2017. 1. 1. 신설.

75) CAS 조정규칙 제1조 제1항.

76) 김용섭, 앞의 논문, 2016년, 101면.

77) CAS 조정규칙 제2조.

78) CAS 조정규칙 제1조 제2항.

79) 김종호, 앞의 논문, 24면.

5. 올림픽경기 특별중재부(Ad hoc Division, AHD)

(1) 도입 배경

CAS는 중재를 통해 스포츠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선수의 권리보호와 스포츠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므로, 선수와 연맹이 매우 짧은 마감시간 내에 무료로 분쟁해결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특히 특별중재부의 설치는 이러한 목적에 잘 부합된다고 하겠다.

그간 몇몇 사례에서 스포츠단체와 선수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가 급기야 소송으로까지 전개되어 선수보호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 스포츠단체에게도 손해배상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이와 같은 우려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특히 올림픽경기 중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CAS 특별중재부(Ad hoc Division)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2) 조직

ICAS가 설치하는 특별중재부는 특별중재인명부에 등재된 중재인, 중재부장, 사무국으로 구성된다.⁸⁰⁾ ICAS 임원회는 CAS 중재인 명부의 중재인으로 된 특별중재인명부를 작성하여 올림픽 경기 개막전에 공표하고, 이들 등재 중재인은 올림픽 경기 장소에 체재해야 한다.⁸¹⁾

ICAS 임원회는 ICAS 위원 중에서 특별중재부장을 선출하며, 특별중재부장은 올림픽경기 중재규칙(Arbitration Rules For the Olympic Games)에 따른 직무 및 기타 특별중재부 운영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한다. 중재부장은 당사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⁸²⁾

CAS는 특별중재부 사무국을 올림픽 경기 장소에 설치하고 해당 사무국은 CAS 사무국장이 통할한다.⁸³⁾ 중재절차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특별중재부장이 영어나 불어 중에서 선택한다.⁸⁴⁾

(3) 관할권

특별중재부 권한의 근거는 올림픽 경기 중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올림픽헌장 그리고 올림픽경기 참가신청서에 포함된 중재조항이다. 올림픽경기 중재규칙은 체육인과 스포츠를 위하여 올림픽헌장 제59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올림픽경기 진행 중에 또는 올림픽 경기 개막식 직전 10일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중재로써 해결하는 것을 목

80)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2조.

81)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3조.

82)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4조.

83)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5조.

84)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6조.

적으로 한다.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작성해야 하는 참가신청서에서도 CAS의 배타적인 중재관리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⁸⁵⁾ 패널의 관할권 흠결에 대한 항변은 절차 개시 시 혹은 늦어도 심리 개시 시에 제기되어야 한다.⁸⁶⁾

(4) 중재지

특별중재부와 각 중재패널의 장소는 스위스 로잔이지만, 특별중재부와 각 패널은 올림픽 경기 장소에서 혹은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장소에서도 권한 내에 속한 모든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특별중재부와 패널의 위치를 스위스 로잔으로 고정한 것은 중재의 준거법을 스위스 중재법이 포함된 국제사법 제12장으로 지정하고,⁸⁷⁾ 장차 해당 중재판정의 승인 혹은 집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중재판정의 국적을 스위스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5) 특별중재부(Ad hoc Division)의 중재절차

특별중재절차는 일방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특별중재부 사무국에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표준양식은 사무국에서 구할 수 있다.⁸⁸⁾ 특별중재부(패널, 중재부장, 또는 사무국)는 중재신청인(claimant)에 대해서 올림픽경기 장소의 주소로 하거나, 중재요청서에 표시된 팩스번호, e-mail 주소로 통지하고 연락한다. 이 모든 것이 곤란한 경우, 사무국에 기탁하는 방법으로 하고 중재피신청인(respondent)에 대해서는 올림픽 경기 장소의 사무실 또는 거주(place of residence)에 배달하거나 팩스 혹은 e-mail로 한다. 당사자들은 사무국에 배달하거나 팩스로 통지하거나 연락할 수 있지만, 중재요청서의 경우는 반드시 사무국에 배달하고 접수증을 수령해야 한다.⁸⁹⁾

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중재부장은 특임중재인명부에 등재된 중재인 중에서 3인으로 된 패널을 설치하고 패널위원장을 지정해야 한다. 사정에 따라서 특별중재부장은 단독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미 특별중재부가 다루고 있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중재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특별중재부장은 두 사건간의 관계 그리고 첫 번째 사건절차의 진행도를 위시한 관련 사정을 참작하여 두 번째 분쟁을 첫 번째 분쟁을 다루는 패널에 배당할 수 있다.⁹⁰⁾

85) 올림픽헌장 제45조에 따른 규칙 제6항에서 각 참가선수들은 올림픽경기 중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CAS에 제기하는데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6)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15조(a).

87)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7조.

88)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10조.

89)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9조(b).

90)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11조.

모든 중재인은 법적 소양과 스포츠에 관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고, 당사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즉각 고지해야 한다. 모든 중재인 그리고 특별중재부장은 올림픽경기 중에 언제라도 특별중재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⁹¹⁾

극히 긴급한 경우, 패널이 설치된 후에는 해당 패널이 그리고 패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중재부장이 이의제기의 대상이 된 결정의 효력을 중지하거나 또는 피신청인을 심리(hearing)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타 다른 잠정처분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특별중재부장 또는 패널은 신청인의 회복불가능한 손해의 예방을 위해서 신청된 조치가 필요한지, 신청인이 청구의 본안에 대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신청인의 이익이 피신청인 또는 올림픽계(Olympic Community)의 다른 구성원의 피해보다 더 큰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⁹²⁾

패널은 사안의 특징 또는 제반 사정, 당사자의 이익, 당사자의 변론권, 임시절차에 특유한 신속성 및 효과의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적절한 심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⁹³⁾ 패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즉시 당사자를 심리하고, 증거와 관련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심리절차에서 자신들이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세워서 즉시 심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⁹⁴⁾

일방 당사자 또는 쌍방 당사자가 심리기일에 출두하지 않거나 패널의 금지명령, 출두명령, 혹은 기타 연락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라도 패널은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⁹⁵⁾

패널은 신청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판단할 전권을 가지며,⁹⁶⁾ 올림픽 헌장, 적용 규칙, 법의 일반원칙, 그리고 자신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법규칙을 근거로 판정할 수 있다.⁹⁷⁾

(6) 중재판정

패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후 24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⁹⁸⁾ 패널 결정은 즉시 집행될 수 있으며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의제기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⁹⁹⁾

패널은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고, 다수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패널위원장이 결정한다. 결정은 문서로 작성되고, 일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패널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하고, 원칙상

91)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12조.

92)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14조.

93)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15조 (b).

94)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15조 (c).

95)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15조 (e).

96)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16조.

97)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17조.

98)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18조.

99)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21조.

간략히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¹⁰⁰⁾

패널은 분쟁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정을 내리고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통상적인 CAS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¹⁰¹⁾ 패널은 통상적인 CAS 절차로 분쟁을 회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이 없다고 해도 통상적인 CAS 절차에서 중재인들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유효한 잠정조치를 허가할 수 있다.¹⁰²⁾ 이 경우에는 시한을 정하여 스포츠중재규칙(Code) 제R38조 및 제R48조에 따라서 CAS에 해당 사건을 제기하도록 하거나 직접 제기(직권제기) 할 수 있다. 어느 경우라도 이의제기 대상이 되는 결정을 내린 단체의 설립규정 혹은 규정에서 정한 시한 혹은 Code 제R49조에서 정한 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¹⁰³⁾

6. 반도핑 중재부(CAS Anti-doping Division, ADD)

(1) 설치배경 및 근거

도핑¹⁰⁴⁾은 국제스포츠법 분야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핵심 쟁점사항이 될 정도로 그 관심이 계속 커지게 되면서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이하 WADA)는 2003년에 WADA Code를 제정하였는데 WADA Code는 WADA에서 제정하는 규범으로 도핑목록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전 세계의 스포츠에 영향을 미치는 통일적인 스포츠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WADA Code는 UNESCO협약의 부록에 붙여져 있어 동 협약에 가입하고 승인한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¹⁰⁵⁾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반도핑중재부(이하 CAS ADD)의 창설은 2015년 10월 1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제4차 올림픽정상회의(The 4th Olympic Summit)의 결의안¹⁰⁶⁾에 따라 그 토대가 마련되었고 그 후 IOC가 2016년 3월 2일에 IOC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올림픽

100)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19조.

101)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20조 (a).

102)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20조 (b).

103) 올림픽경기 중재규칙 제20조 (c)

104) 2018 평창올림픽에 적용된 IOC 반도핑규약(ADR)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핑은 규약 제2조의 1에서 제2조의 10을 구성하고 있는 반도핑 규정 위반에 하나 이상을 범하는 경우를 이르는데 그 10가지 경우를 열거해 보면, 2.1 선수의 샘플에서 금지 물질 또는 그 대사산물(Metabolites), Marker(금지물질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을 나타내주는 혼합물, 일련의 혼합물들 또는 생물학적 변이)의 존재, 2.2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의 시도, 2.3 샘플수집의 실패, 제출거부 또는 회피, 2.4 소재 불명, 2.5 도핑관리 어느 부분에 있어서든 조작 또는 조작의 시도, 2.6 금지된 방법이나 금지 물질의 소지, 2.7 어떠한 금지 물질이나 금지방법의 매매 또는 매매의 시도, 2.8 경기내에서 또는 경기 밖에서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의 투약 또는 투약의 시도, 2.9 공모, 2.10 금지된 연합’을 뜻한다.

국내스포츠에 있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에서 도핑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5) 김용섭, “교육, 문화 및 스포츠의 글로벌 법적 이슈에 관한 고찰”,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제18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5, 168면.

106) Olympic Agenda 2020-15. Change the philosophy to protecting clean athletes

경기 도중에 발생한 반도핑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종전의 상벌위원회에서 독립적인 기구인 CAS ADD로 결정을 위임하기로 함으로써 탄생하게 되었다. IOC 제4차 올림픽정상회의에서는 올림픽 어젠다 2020의 제 15항에 명기되어 있는 깨끗한 선수의 권익보호(Protecting the Clean Athlete)에 입각하여 스포츠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반도핑 테스트를 하기로 하였다. 이 점은 동 회의에서 도핑에 대한 억제와 깨끗한 선수의 권익보호에 어떠한 관용도 없다고 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선언은 깨끗한 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도핑의 근본적인 목표를 지향하면서 승부조작, 경쟁의 왜곡 및 이와 관련된 뇌물 수수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¹⁰⁷⁾ 그 법적인 근거로는 올림픽 헌장 제59조 2항 4(Art.59.2.4 Olympic Charter:OC) 및 2016 리우올림픽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 반도핑규정 제8조 2항(Article 8.2.2 IOC Anti-Doping Rules for Rio 2016: IOC ADR)에서 찾을 수 있다. CAS ADD규칙은 2016년 4월에 2016 리우올림픽게임을 고려하여 제정되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반도핑규정(IOC ADR)이 실제법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반도핑중재규칙(Arbitration Rules applicable to the CAS ADD)은 절차법적인 성격을 띤다. 이 CAS ADD규칙의 내용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규정(CAS Code)의 체계 속에서 CAS AHD규칙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⁰⁸⁾

2016년 리우올림픽 전까지는 도핑사건을 IOC의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였다. IOC의 관행은 올림픽경기 규칙 제21조에 따라 IOC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특별 징계위원회(ad hoc Disciplinary Commission: Ad Hoc DC)를 설치할 수 있었다. 이 위원회를 통하여 도핑 규정 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IOC 집행위원회에 조치를 권고하였다. 동일한 절차가 올림픽현장의 위반 등과 관련된 도핑 이외의 징계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특별징계 위원회는 올림픽경기 이전에 변호사자격 가진 IOC 위원들과 다른 두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들의 주요 임무는 IOC집행위원회(IOC Executive Board)에서 제출하는 권고안을 처리하는데 있다. 2016년 리우올림픽부터는 IOC가 도핑규정위반에 대한 결정권한을 CAS ADD에 위임했기 때문에 도핑 이외의 징계사건만 처리하게 되었고 CAS ADD가 그때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 반도핑규정(IOC ADR)에 따라 해당 도핑사건을 처리하게 되었다.¹⁰⁹⁾

한편 반도핑 중재부(CAS ADD)는 절차 규율에 따라 도핑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로서 엄밀히 따지면 법원은 아니지만 어떠한 스포츠 조직으로부터도 독립된 기구로 도핑에 관한 분쟁사건에서 사실상 최고심급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CAS의 중재판정¹¹⁰⁾에 불만이 있는 경우 스위스연방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승소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¹¹¹⁾

107) 김용섭,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4호 (통권 제49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6, 104면.

108) 연기영, 앞의 논문, 2017, 7면.

109) 연기영, 앞의 논문, 2017, 7면.

110) CAS AHD와 ADD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역시 스위스연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IOC 반도핑규정(IOC Anti-Doping Rules)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적용된 IOC 반도핑규정(이하 IOC ADR)은 세계반도핑기구의 규약(World Anti-Doping Code, the Code)을 채택하고, IOC 및 WADA의 다른 일부의 문서들에 의해 보완된 1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IOC ADR의 서문에서 ‘이 반도핑규칙의 적용범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IOC가 관할권을 가지는 모든 도핑 관리에 제한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 규칙은 (a)IOC와 (b)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직접 참가하는 선수들, 또는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IOC의 권위에 귀속되어진 누구라도 이 법에 의해 평창올림픽에 참가자격이 있는 상태로서 적용대상이 된다. 선수들은 제한 없이 IOC의 권한에 귀속되는데 그들의 국가 올림픽위원회에 의해 평창 올림픽게임과 그 기간에 앞서 잠재적 참가자로서, 특별히 국가 올림픽위원회의 최종선정명단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된다.) (c) 참가 선수들을 지원하는 모든 선수지원단원, (d)각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연맹(IFs) 등을 포함하는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는 공인된 사람들, (e)평창올림픽에 관계하여 IOC의 권한 하에서 (비록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활동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제한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칙은 실질적인 반도핑 조항뿐 만 아니라 일부 절차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IOC가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CAS ADD 규칙에 따라 CAS ADD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패널의 구성과 중재절차는 CAS ADD 규칙을 적용한다.¹¹²⁾

(3)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반도핑 중재부(CAS ADD)의 주요 규정

1) 중재신청 당사자

일반적으로 CAS ADD 절차의 당사자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향소되어지는 결정에 영향을 받는(대상이 되는) 다른 자(Person), IOC, 관련 IF, 당사자가 속해있는 국가의 반도핑기구, 그리고 WADA 이다. CAS ADD에 제기되는 전형적인 분쟁은 올림픽경기 동안에 반도핑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언제나 IOC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올림픽경기 중에 CAS ADD에 의해 결정되는 제재는 예를 들면, 스포츠경기 결격, 메달 철회, 올림픽경기 출전 박탈 등에 국한되며, 모든 추가 제재는 해당 국제경기연맹이 결정하게 된다.¹¹³⁾

111) 1984년 이래 2010년 말까지 5건만이 승소하였다. 김용섭, 앞의 논문, 2016, 107면.

112) Articles 8.1.1 and 8.1.2 of the IOC ADR.

113) CAS OG AG 16/02 IOC v. T. Zielinski, CAS OG AD 16/07 IOC v I. Artykov; CAS OG AD 16/06 IOC v. K. Da Silva Ramos.

2) 관할범위

CAS 반도핑중재부(ADD) 중재규칙은 세계반도핑규약(WADC) 위반 시에 적용되며, CAS 특별중재부(AHD) 중재규칙의 범위와 병행하여 적용될 수 있다. 올림픽헌장 제61조에 따라 올림픽 게임 기간 중 발생하거나 올림픽 개막식 10일전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특별중재부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⁴⁾

CAS ADD와 AHD규칙 간의 주요 절차상의 차이점은 ADD가 도핑관련 문제에 대한 1차 중재 관할 권한을 가지며 IOC ADR에 따른 의사 결정 및 의사 결정의 수행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CAS AHD는 올림픽게임을 위한 IOC, NOC, IF 또는 조직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IOC반도핑규칙 위반에 관한 결정의 항소, 결과, 가처분, 유예 결정과 관할권 결정을 비롯한 모든 도핑관련 결정은 오직 CAS에만 항소할 수 있다.¹¹⁵⁾ 올림픽 헌장에 따라 IOC 상벌위원회로 이관하였던 권한을 2016년 리우 올림픽 기간 중에 세계반도핑규약(WADC)을 위반할 경우 독립된 기구인 CAS ADD로 그 권한을 다시 이관한 것인데 그 법적 근거는 올림픽헌장 제59조 제2.4항과 IOC 반도핑규정 제8조 2.2항으로 볼 수 있다.

리우 올림픽경기를 위해 설치된 CAS ADD의 첫 번째 사례에서 패널은 이전의 관할권이 없는 경우 CAS ADD에서 CAS AHD로 사건 파일을 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패널은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부서에 제출서류, 마감일 등의 요구사항이 있음을 발견했고 또한 CAS 규정에 명시된 기존 절차에 따라 신청된 중재사건은 CAS 보통중재부에서 CAS 항소중재부로 이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CAS ADD와 CAS AHD의 경우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¹¹⁶⁾

3) 중재부의 구성과 사무소

CAS와 CAS AHD의 구조와 유사하게 CAS ADD는 중재부장, 부부장, 특별 목록에 제시된 중재인명부 및 중재부사무소로 구성되며, 이들 모두는 ICAS 위원회에서 임명된다.¹¹⁷⁾

위원회를 통해서 활동하는 ICAS는 반도핑 문제 전문가들로 특별중재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특별명부는 CAS 일반중재인명부에 있는 중재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ADD 특별 명부에 있는 중재인들은 올림픽경기 기간 중에 일반적인 CAS AHD 활동이나 다른 특별위원회와 연계하여 반도핑 문제로 활동할 수 없다. 특별중재인명부는 올림픽이 개최되기 앞서 공표되어야 된다. 그 명부는 그 후에 ICAS 위원회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다.¹¹⁸⁾

114) Article 1 AHD Rules. Rules 61 para. 2 OC reads as follows: "Any dispute arising on the occasion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Olympic Games shall be submitted exclusively to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

115) IOC ADR, Article 12,2 IOC 반도핑규칙 위반에 관한 결정의 항소, 결과, 가처분, 유예 결정과 관할의 인식

116) 연기영, 앞의 논문, 2017, 9면.

117) Article 2 of the CAS ADD Rules.

ICAS 위원회는 스포츠관련 중재규칙 제4조 d)와 e)에 따라 ICAS에서 임명된 ICAS위원 중에서 CAS ADD의 부장과 부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중재부장은 당사자들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CAS ADD가 적절하게 작동되기 위한 모든 역할과 또 현재의 규정에서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부장도 당사자들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중재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언제든지 중재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¹¹⁹⁾

CAS는 올림픽경기가 열리는 개최지에 CAS ADD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그 사무소는 CAS 사무총장의 권한 하에 둔다. 올림픽경기 기간 외에는 CAS ADD 사무소는 스위스 로잔에 있는 것으로 한다.¹²⁰⁾

4) 중재절차에 사용되는 언어와 중재에 관한 증거법 및 소재지

신청서 등 모든 서류의 작성이나 구두변론 등을 포함해 CAS와 관련된 기구와 중재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와 불어이다.¹²¹⁾ 리우 올림픽경기 중에는 CAS ADD의 모든 절차가 영어로 진행되었다. 28건의 AHD 절차 중 한 건만 불어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중재결정문이 불어로 작성되었다.¹²²⁾

CAS ADD와 각각의 중재 패널의 소재지는 스위스 로잔이지만 올림픽 소재지나 그밖에 그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재에 관한 재판의 증거법은 스위스 국제사법 12장이 적용된다.¹²³⁾

5) 대표와 조력 및 통보와 의사교환

당사자 및 이해 당사자(9조에서 정의됨)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들이 선정한 사람에 의해 대표되거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판정시한과 관련해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자메일 주소, 전화번호가 10조에 기재된 대로 중재절차 진행상 연락 가능하도록 중재신청서 상에 나타나야 하며 중재기일의 시작 시점에 제출되어야 한다.¹²⁴⁾

CAS ADD(패널, 중재부장단, 중재사무소)로부터의 모든 통보와 의사전달은 그들의 실질/법적 주소지로 또는 올림픽 소재지(올림픽 기간 동안), 또는 통상의 전자메일주소로 다음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전해져야 한다.

- IOC 법무부서, 선수와 IOC ADR에 정의된 바 관련된 사람, 또는 그들의 대표자, IF(s), NOC(s), WADA.

118) Article 3 of the CAS ADD Rules.

119) Article 4 of the CAS ADD Rules.

120) Article 5 of the CAS ADD Rules.

121) Article 6, 10 of the CAS ADD Rules.

122) 영어와 불어가 동등한 입장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텍스트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영어가 우선권을 가진다. Article 23 of the CAS ADD Rules. 연기영, 앞의 논문, 2017, 10면.

123) Article 7 of the CAS ADD Rules.

124) Article 8 of the CAS ADD Rules.

긴급 시에 CAS ADD는 전화상으로 통보할 수 있으나 곧바로 서면이나 이메일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서면확인 부재 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면 유효하다.

당사자들로부터 통보와 의사소통은 올림픽게임 현장이나 로잔(非 올림픽기간)에 있는 CAS 중재사무소에 전달되거나 이메일로 전송되어야 하는데 10조에 소개된 신청서, 즉 반드시 CAS ADD 중재사무소에 배달되거나 이메일 전송되어지고 수령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6) 신청서 작성

IOC ADR에 따르면 반도핑 위반으로 의심되는 건은 반드시 서면신청서의 방식으로 CAS ADD에 제소되어야 한다.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수 또는 IOC ADR에 정의된 바 관계당사자, 그들의 대표자의 올림픽게임 소재지 주소/전자메일 주소, IF 또는 관련 NOC의 주소/전자메일 주소, 관련 자료를 포함한 신청서가 근거한 물리적 사실, 법적 논점에 대한 간단한 서면, 구제요청과 해당되는 경우 가처분 조치들, CAS ADD 관할권에 근거한 적절한 언급들, 신청서가 올림픽기간 동안 제소되었다면 IOC Medical and Scientific Group,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창설된 책임기관의 올림픽소재지 주소, 절차상의 목적으로 연락 가능한 전자메일 주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그러한 IOC Medical and Scientific Games Group,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창설된 책임기관의 대표자의 동일한 정보.

7) 중재패널의 구성과 독립성

신청서를 받는 즉시 CAS ADD의 부장 또는 부부장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중재법 2조(Article 2)에 기재된 특별명단 상 나타나는 한명 또는 세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패널을 지명해야 한다.

만일 이미 CAS ADD에 계류 중인 중재건과 관련 있는 신청서가 접수된다면, 부장이나 부부장은 두 번째 건을 첫 번째 건을 결정하도록 임명된 패널에 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건의 관련성과 첫 번째 사건의 그 진행상황 등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¹²⁵⁾

모든 중재인은 법률교육을 받아야 하며, 반도핑 문제에 관해 인정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사자들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독립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즉시 밝혀야 한다. 모든 중재인은 올림픽기간에는 언제든지,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올림픽기간이 아니라도 CAS ADD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한다. CAS 중재인은 CAS

125) Article 11 of the CAS ADD Rules.

ADD 이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거나 상담 등을 한 적이 없어야 한다.¹²⁶⁾

중재인은 자신의 독립성에 관한 정당한 의심이 생겨서 한 당사자가 중재인의 실격 조건을 제기한 경우에 자신이 자발적으로 사퇴하든지 CAS ADD 부장 또는 부부장이 실격 처리를 해야 한다. CAS ADD 부장은 이러한 독립성 이의제기에 대해 상황이 허락하는 한 당사자와 중재인에게 청취 기회를 부여한 직후에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¹²⁷⁾

8) 준거법 및 결정 기한

패널은 IOC ADR, WADC, 관련 스포츠 연맹(IF)규칙, 관련 법규, 스위스법 및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쟁을 판정해야 한다.¹²⁸⁾

올림픽기간 동안에 패널은 청문회가 끝날 때로부터 또는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증거절차가 끝나는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점은 올림픽 특별중재부(AHD)의 중재규칙에서 규정한 ‘신청서제출로부터 24시간 내’라고 되어 있는 결정 기한 규정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만일 상황이 허락하면, CAS ADD의 부장 또는 부부장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올림픽기간이 아닐 때, 패널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¹²⁹⁾

IV. CAS의 당면 과제

1. CAS의 중립성 문제

1994년 파리협정에 따라 ICAS가 설립되어 IOC를 대신해서 CAS 운영과 재정을 책임지고 관장하면서 CAS의 독립성과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해 왔음에도 CAS가 충분히 중립적인가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과거에는 CAS 중재인의 대부분이 각종 협회에 의해 지명되고 전직 협회장 등이 중재인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러한 이유로 CAS가 선수들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최근 10년 사이에는 중재인을 협회 관계자가 아닌 국제 중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중에서 임명하려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운동선수들 중에는 CAS의 중립성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09년 독일의 스피드 스케이팅 장거리 여자선수인 Claudia Pechstein

126) Article 12 of the CAS ADD Rules.

127) Article 13 of the CAS ADD Rules.

128) Article 17 of the CAS ADD Rules.

129) Article 18 of the CAS ADD Rules.

사건은 CAS 절차에 대한 선수들의 불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독일 빙상 역사에 큰 획을 그은 Pechstein은 도핑테스트에서 한 번도 양성반응이 나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액검사 결과만을 기초로 2009년 국제빙상연맹(International Skating Union, 이하 ISU)으로부터 2년간 대회출전 금지처분을 받았다. ISU를 상대로 한 CAS 중재 및 스위스연방법원에서의 항소절차가 기각되자 그녀는 독일법원에 ISU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독일연방대법원(BGH)은, Pechstein은 자발적으로 CAS의 중재심판을 받아들였으므로, ISU의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단지 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CAS에 중재하도록 한 중재합의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독일의 경쟁법상의 의미에서 사업자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은 CAS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이고 도핑과 관련된 국제스포츠분쟁은 국내법원이 아닌 CAS의 중립성과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¹³⁰⁾

하지만 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하려면 국제스포츠 경기연맹의 규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CAS에 제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재합의에 서명하여야만 참여가 가능한 현 중재합의규정은 사실상 국가 법원에 의한 제소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CAS에 중재합의를 의뢰하는 것으로 사실상 강제적 측면이 있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있고 자동적인 중재 합의 역시 불공정한 거래의 조건이 될 수 있는데 CAS에서 이와 같이 스포츠 단체의 선수에 대한 우월적 지위남용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하느냐가 CAS의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선수가 국내법원과 CAS 사이에서 분쟁 발생 시 그 해결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스포츠 고유의 분쟁을 일반 법원으로 가져가는데 따르는 전문성 약화와 신속하지 못한 절차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크다는 점에서 Pechstein 사건에 대한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CAS의 존재가치를 신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CAS의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으로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스포츠분쟁의 사실상의 최종적인 심판기구로서의 CAS의 위상은 어쩔 수 없이 약화될 것이다.

CAS의 중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패널을 구성하는 중재인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선수와 연맹으로부터 가치중립적인 경력을 가진 중재인으로 공익위원제도를 두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130) 김용섭, 앞의 논문, 2016, 110면.

2. 스포츠분쟁해결기구로서의 CAS의 독립성 문제

앞의 章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CAS는 스포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ADR기구로서 IOC가 출범시킨 조직이었기 때문에 창설될 때부터 IOC로부터 조직·재정·운영 등의 측면에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특히 CAS의 재정을 전적으로 IOC가 부담하였고, CAS의 규칙은 IOC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IOC회의에서만 개정될 수 있었다.¹³¹⁾ 그 밖에 CAS의 구성에서도 CAS위원장이 IOC위원을 겸하도록 하고 있다든지 CAS위원 60명 중 30명을 IOC가 선출하고 그 중에서 15명이 IOC위원을 겸하도록 한 점 등 독립성에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 후 CAS는 이러한 종속 문제를 ICAS를 설립함으로써 IOC로부터의 독립성을 차츰 확보해 나가고 또 ‘스포츠관련 중재규칙’과 항소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2003년에는 세계 반도핑규칙 제13조에서 CAS를 도핑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최종기관으로 규정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및 발전을 해 왔다. 그럼에도 CAS가 과연 진정한 독립성을 가진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인가 하는 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CAS는 1984년 사마란치 당시 IOC위원장의 제안으로 출범시킬 때부터 그 지향점이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하고 올림픽을 상업화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올림픽의 고유한 가치가 다소 손상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음에도 올림픽에 있어서 적자해소와 이윤추구를 위해 올림픽에 존재하는 과도한 상업성의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¹³²⁾ 즉, 올림픽경기대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끌면서 상업적으로도 성공하기 위해서 CAS는 단지 스포츠 단체의 제재조치와 경기규정에 기초하여 내린 결정에 대한 적법성을 심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스포츠 분쟁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올림픽을 더 스포츠 이벤트화하고 대중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끄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CAS는 비록 독립적으로 존속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태생적으로도 IOC와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구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분야의 국제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CAS 또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CAS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즉, 미·러 등 강대국들 특히 스포츠 강국들의 막후 파워 게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최근의 한 예를 들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불과 9일 앞둔 2018년 1월31일에 CAS는 평창올림픽 출전금지 징계에 이의를 제기한 러시아 선수들 39명 중 28명을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징계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간 도핑으로 선수자격이 박탈되고 징계처분을 받은 여타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겠다.

이에 러시아는 CAS 판결을 환영한 뒤 28명중 현역으로 뛰고 있는 15명 가량의 선수들

131) 지철호, 앞의 논문, 92면.

132) 김철, “IOC의 국제법상의 지위”,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0, 245-246면.

을 초청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IOC가 최종적으로 이들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이번 CAS의 판결이 바로 현재 CAS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실례라고 하겠다.

도핑은 공정한 경기(fair play)가 생명인 스포츠분야에서 올바른 스포츠정신(sportsmanship)을 훼손시키는 심각한 중대한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선수의 건강과 생명보호 더 나아가 청소년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역행하는 부작용 등을 낳기 때문에 국제 스포츠계가 그 위험성을 인지하여 세계반도핑기구(WADA)를 만들고 WADA Code를 제정해 그동안 도핑행위를 강력히 규제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도핑문제에 관해 그 분쟁해결의 최종판정기관인 CAS가 이처럼 일관성 없이 불공정하고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분쟁해결기구로서 그간 CAS가 노력해 온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추락할 뿐만 아니라 자칫 스포츠경기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특히 이번 경우는 지난 소치올림픽에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관여해서 도핑검사를 무력화시킨 스포츠계의 존립을 흔든 사건임에도 러시아가 스포츠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에 굴복해서 CAS가 타협점을 찾으려 했던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CAS 중재위원들의 개인적인 도덕성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도와 법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CAS의 조직이 좀 더 재정비되어 도핑에 대한 징계여부와 제반 스포츠분쟁과 관련된 당사국이나 그 밖의 상업적 환경에 영향 받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해서 공정한 판정을 내리는 것만이 CAS 스스로 그 존재이유와 권위를 되찾는 길이 될 것이다.

V. 결 론

1984년 CAS가 탄생된 이래 초기에는 그 조직의 독립성도 약했고 또 덜 알려진 관계로 분쟁처리기구로서의 역할이 미흡해서 분쟁이 처리된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그 후 1994년 파리 협약으로 독립성을 완성하였고 IOC와 여타 국제스포츠 단체들이 스포츠 분쟁을 CAS의 중재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한 결과 오늘날에는 매년 400여건의 분쟁을 처리하는 기구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CAS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보다 CAS가 제공하는 조정, 중재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그것들은 비밀보장, 중재·조정관들의 전문성, 절차의 유연성과 간소화, 속도, 비용절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중재판단의 실효성으로 간략히 규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CAS의 존재는 스포츠관련 분쟁에서 넓은 범위에 걸쳐 일반적으로 효력이 있는 다양한 최종적인 법적 해결을 제시해 왔다. 특히 사건의 초기 단계에

서 임시의 보호조치와 구제가 마련되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임시적인 법적 조치들은 2016년 박태환선수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그 성질상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유용한 것이었으며 특히 사건을 빨리 결론지어야 할 시간이 촉박한 경우의 분쟁해결수단으로서 무엇보다도 적절한 구제수단이 되었다.

또한 CAS 규정들은 CAS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형식주의를 배제하도록 고안되었는데, 예를 들면 중재요구 제기부터 최종판단까지 4개월의 기간제한을 둔 규정이라든지 CAS 조정은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은 CAS 절차의 유연함으로 인해 그 빠른 속도 또한 보장하게 된 규정들로 결국 CAS의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장점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제 CAS는 국제 스포츠계와 국제 중재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동안에 축적된 다양한 활동들을 보게 되면, 비록 몇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현재 이 기구가 스포츠분쟁해결의 실제적이고도 유용한 기관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앞으로 국제스포츠분쟁이 더욱 빈번해질 것에 대비하여 CAS는 한층 더 진화된 분쟁해결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특히 CAS의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과 같은 때에 CAS 중재인들은 더욱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리에 관한 깊은 이해에 기초한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CAS가 내린 러시아 선수들에 대한 징계무효판결은 앞으로 어떻게 강대국들의 막후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정한 판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CAS의 앞으로의 과제를 남긴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 국제스포츠분쟁의 최종적이고 권위를 가진 해결기관으로 남아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CAS가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그 제도적 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병근,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스포츠분쟁의 처리”, 스포츠와 법, 제5권, 한국스포츠법학회, 2004.
- 김대희, “국내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설치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4.
- 김상겸, “스포츠분쟁해결에 관한 헌법적 연구”, 스포츠와 법, 제5권, 한국스포츠법학회, 2004.
- 김용길, “ADR을 활용한 스포츠사건의 해결에 관한 고찰-중재제도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1.
- 김용섭, “교육, 문화 및 스포츠의 글로벌 법적 이슈에 관한 고찰”,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5.
- 김용섭,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독일 빙상선수 Claudia Pechstein의 도핑사례 분석을 견하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4호(통권 제49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6.
- 김중호, “국제스포츠에 있어서 중재를 통한 분쟁의 해결-유럽의 프로축구분쟁관련 중재절차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5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 김철, “IOC의 국제법상 지위”,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0.
- 연기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비추어 본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CAS)의 역할과 과제”,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통권 제1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 연기영, “2016리우올림픽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반도핑중재부의 규정과 활동”,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1호(통권 제50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7.
- 전홍구, “스포츠중재의 필요성과 중재합의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6.
- 지철호, “ADR을 통한 스포츠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5.
- Ian S. Blackshaw, Robert C. R. Siekmann & Janwillem Soek,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1984-2004 (Editors), TMC Asser Press, The Hague, The Netherlands, 2006.
- Ettinger, David J. “The Legal Status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4 Pace Y.B. Int’l L. 97, 1992.
- James, Mark et al., “Sports Law, 3rd ed, Cavendish Publishing, 2006.
- Reeb, Mattieu,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in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1984-2004」, TMC Asser Press, The Hague, The Netherlands, 2006.

Nafziger, James A.R. “International Sports Law”, 2nd ed,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2004.

Yeun, Kee-Young, “The Developement of International Sports Arbitration Bodies and Challenges of Legislative Policy for Reestablishment of Sports Arbitration Agency in Korea”,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ol. 23 No.3,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2013.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홈페이지 <http://tas-cas.org/>

국제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olympic.org/>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http://www.kcab.or.kr>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http://www.sports.or.kr>

ABSTRACT

An Overview for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as the authority to Settle the Sports-related Disputes

Chang-Joo Sohn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was created to focus on the procedural complexity in the resolution of sports-related disputes, confidentiality, the matter of expenses, and the necessity of prompt settlemen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sports. The CAS had originally launched as one of bodies of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but later it became properly operational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o facilitate sports-related disputes when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 (ICAS), which came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aris Agreement in 1984 and has acted in place of IOC, took responsibility for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ing of the CAS.

The CAS is composed of four divisions, the Ordinary Arbitration Division and the Appeals Arbitration Division, the Ad hoc Division created later in 1996 and the CAS Anti-Doping Division (CAS ADD) established as from 2016 only to conduct proceedings and to issue decisions on an alleged anti-doping rule violation, and two (Sydney and New York) permanent decentralized offices. The head office of the CAS is Lausanne, Switzerland.

Since CAS ADD was established, CAS Ad hoc Division has had jurisdiction over the appeal case against a decision pronounced by the IOC, an NOC, an international Federation or an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Olympic Games. Although there are so many virtues of CAS as a resolution authority for sports-related disputes in terms of its organization, arbitration rules and procedures, it is also true that the CAS has not been showing the consistency. The CAS should overcome these issues through much more advanced system and its instant and fair decisions.

Key Words :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ICAS, IOC, Anti-doping Rules, CAS Ad hoc Division(CAS AHD), CAS Anti-doping Division(CAS ADD), World Anti-Doping Agency(WADA), World Anti-Doping Code(WADC), Arbitrator, Panel, Sports-related Disputes.